

제주지방법원 2024. 10. 15 선고 2022가단5411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

피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원

담당변호사 문성윤

변론 종결2024. 3. 12.

판결 선고2024. 10. 15.

주 문

1. B 주식회사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2. 2. 체결한 매매계약을 299,279,239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99,799,2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B 주식회사(이하 'B'이라고만 한다)는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2016. 4. 27.경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.

나. B은 2020. 12. 2.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(이하 '이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나. 기업은행은 B이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2021. 7. 23.경 기업은행에 237,720,1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 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하여

갑 제20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B은 2021. 3. 5.

적극재산으로 약 3,611,470,260원 내지 4,020,094,260원, 소극재산으로 약 4,716,797,490원을 가져 채무초과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일자에 가까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20. 12. 2.에도 채무초과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며, 달리 반증이 없다.

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이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한편,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금융기관 앞으로 설정해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부 취소하면 당초 채권자들에 대한 일반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.

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축탁결과, C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,000,293,700원이고

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은 804,805,720원이다.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중 1,195,487,980원(= 2,000,293,700원 - 804,805,720원)이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.

그러므로 취소의 범위는 위 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구상금 채권 299,799,239원이 된다.

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99,799,239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99,799,2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

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4. 결론

판사임재남

별지